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의원 : 최정훈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23년 4월 13일

3. 개정이유

○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 감사시기인 3년 주기와 동일하게 맞추고자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임기는 2년이며, 시군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도민감사관이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감사관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